



의안번호	제 2011 - 18 호
의 결 연 월 일	2011. 9. 16. (제 36 차 회의)

의
결
안
건

자문위원단 위촉계획의 건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1. 의결주문

「양형위원회 자문위원단 위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어 「양형위원회 자문위원단 위촉계획(안)」을 의결하여 양형기준 설정·변경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단 인원 및 구성원

- 10 ~ 20인의 자문위원을 위촉
- 위원 구성
 -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명망가·전문가 위주로 위촉

나. 운영 방식

- 자문위원 전체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 소집 시기는 위원장이 결정
-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지명

다. 수당 지급 여부

- 양형위원회나 다른 외부 자문위원단 회의 시 지급하는 수준으로 지급
- 예컨대, 회의참석 시 20만 원(참석수당 10만 원, 조사활동수당 10만 원) 지급하는 방안

4. 참고사항

- 「양형위원회 자문위원단 위촉계획(안)」 : 붙임과 같음

양형위원회 자문위원단 위촉계획(안)

I. 필요성

-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양형기준에 반영하고 있음
- 하지만, 외부로부터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다른 위원회나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다양한 직역의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양형기준 설정·변경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성 증대

II. 관련 규정

1. 양형위원회 운영 규정

제27조(자문위원 위촉)

- ① 위원회는 양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5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8조(자문위원의 임기 등)

-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9조(자문의견의 요청)

-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자문위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자문의견을 요청받은 자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등)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수석전문위원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III. 국내 및 외국 사례 검토

1. 국내 자문위원 위촉 사례

가. 법원 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분 류	내 용	비 고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	· 현재 7명
위원 자격	·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	
운영 방식	· 위원은 비상근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	
수당 지급	· 통상 회당 20만 원 지급	

나.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분 류	내 용	비 고
구 성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인 이내 위원	· 현재 20명
위원 자격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헌법재판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헌	

	법재판에 관한 학식과 사회적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위촉	
운영 방식	· 헌법재판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	
수당 지급	· 통상 회당 20만 원 지급(참석수당 10만 원, 조사활동 연구비 및 발제비 10만 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회

분 류	내 용	비 고
구 성	· 20인 내외의 위원	· 현재 18명
위원 자격	· 선거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선거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 · 임기 2년, 연임 가능	
운영 방식	·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소집	
수당 지급	· 수당 지급(구체적 금액은 파악 곤란)	

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분 류	내 용	비 고
구 성	· 50인 이내 위원	· 현재 28명
위원 자격	·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자, 인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 · 임기는 2년, 연임 가능	
운영 방식	·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	
수당 지급	·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수당 지급	

2. 미국 연방 양형위원회의 자문위원 위촉 사례

가. 변호사 자문위원단(Practitioners Advisory Group, GPA)

분 류	내 용	비 고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20인 - 투표권자 17인 : 의장 1, 부의장 1, circuit 위원 12, 일반 위원 3인 - 비투표권자 3인 	11circuit + D.C. circuit
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사건 변호사 중에서 위촉 · 임기는 3년, 연임 가능 	
운영 방식	· 연 2회 이상 회의	

나. 보호관찰관 자문위원단(Probation Officers Advisory Group, POAG)

분 류	내 용	비 고
구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13인 - 투표권자 12인 : circuit 대표자 - 비투표권자 1인 : 연방 보호관찰소 대표자 	11circuit + D.C. circuit
위원 임기	· 임기는 5년	
운영 방식	· 연 1회 이상 회의	

다. 범죄피해자 자문위원단(Victims Advisory Group, VAG)

분 류	내 용	비 고
구 성	· 위원 9인 이하	
위원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 분야 전문지식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위촉 · 임기는 3년 	
운영 방식	· 연 1회 이상 회의	

IV. 자문위원단 구성 방안

1. 자문위원단 인원 및 구성원

- 10 ~ 20인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방안
- 위원 구성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교육계, 노동계, 여성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직역의 명망가·전문가 위주로 위촉

2. 운영 방식

- 자문위원 전체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소집 시기는 위원장이 결정
-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지명

3. 수당 지급 여부

- 양형위원회나 다른 외부 자문위원단 회의 시 지급하는 수준으로 지급
- 예컨대, 회의참석 시 20만 원(참석수당 10만 원, 조사활동수당 10만 원) 지급하는 방안